

#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정책

양 축 구 서기관  
농림부 가축방역과

## 가.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 대책

### 조류인플루엔자란 ?

- 닭·오리·칠면조 및 야생조류 등에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전파가 빠르고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(highly pathogenic)·저병원성·비병원성으로 크게 분류하고 있음.
- 오염된 분변, 비말, 물, 사료 등에 의해 전파되며, 잠복기는 수 시간에서 2~3일(OIE에서는 최장 잠복 기를 21일로 규정)
- 고병원성의 경우 80% 이상의 급격한 폐사, 심한 산란율 저하, 벼슬의 청색증, 안면부종 등의 증상을 나타냄.
-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전염병이며, 국제수역사무국(OIE)은 List A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음.

### □ 국내 발생 및 방역 추진상황

- 작년 12.10 충북 음성에서 최초 발생후 10개 시·군(7개 시·도)에서 총 19건 발생
  - 닭 10건(종계 1, 산란계 7, 육계 2), 오리 9 건(종오리 8, 육용 1)

- 모든 발생지역에 위험지역(3km) 및 경계지역(3~10km)을 설정, 이동통제, 닭·오리 등 살처분(392농가 5,285천수)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 시행
- 경남 양산 이동제한 해제('04.5.29)를 마지막으로 모든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, 발생 농장 및 인근농장 가축 재사육을 위한 입식 시험 완료
  - 입식시험(21일간) 30농가 완료(7.13일 완료)  
국내 종식상황 OIE 통보('04.9.21)
  - OIE 기준 : 마지막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 ('04.3.21)후 6개월 경과
  - 일본은 우리나라산 가금류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('04.10.13)
- 주요 방역조치 내역

- 관계부처·지자체간·생산자단체 공조체제 구축, 방역추진
  - '03.12.21 총리주재 관계장관 및 도지사 긴급대책회의 개최
  - 농림부 대책상황실을 정부합동상황실로

- 개편 운용('03.12.27)**
- 계육협회 등 관련단체장까지 참석, 일일 추진상황 점검 및 대책협의회 개최('03. 12.17~'04.1월말, 차관주재)
  - 발생지역 및 신고다발 지역 집중방역 관리
    - 중앙 방역지원팀(농림부, 수의과학검역원)을 현지에 상주케 하여 기술지원, 농가 방역지도, 이동통제, 예방살처분 등 방역 활동 자문
    - 신고가 집중되는 나주지역을 집중방역 지역으로 관리
  - 가축방역협의회 개최(소위원회 포함 11회), 기존의 AI 방역 요령을 국제규정과 국내 현실에 맞게 조정 시행
    - 위험지역(반경 3km), 경계지역(반경 4~10km)별로 닭과 오리를 구분하여 방역지침을 명시
    - 가금류 살처분, 깔짚·분뇨·사료의 반출·입 통제, 부화장·도축장·육가공장 폐쇄 또는 제한적 영업, 종란·식용란 폐기 등
  - 확산방지를 위한 가금관련 시설 조치 및 혈청검사 등 실시
    - 관련 부화장·도축장 폐쇄(16개소 : 부화장 12, 도축장 4) 및 전국 오리부화장 부화증지
    - 전국 종오리농장, 육용오리 주산지 및 발생농장 관련 농장·부화장 등의 유통경로 별 혈청검사(962농장 17,623건), 양성농장 2건 색출
    - 닭·오리도축장(61개) 가축방역관 상주, 출하 닭 정밀검사 실시
  - 닭·오리 농장간 교차오염 방지 위한 접촉금지 조치(닭·오리 및 사료 운반차량 방역수칙, 농장·도축장·부화장·분뇨 처리수칙 배포)
  -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천수만, 순천만, 주암댐, 낙동강 하류, 영산강, 주남저수지 등 24개 지역 총 5,460점 시료검사 결과 전부 음성
  - 닭·오리농장 분뇨 방역관리 강화
    - 발생농장(19개소)은 30일경과 분변검사 후 매몰·소독 또는 60일경과 분변검사 후 외부반출
    - 위험지역·경계지역 및 일반지역은 이동 제한 해제후 분뇨 반출
  - 천안(1.25)·양주(3.20)에서 추가발생 이후 반경 30~40km를 “특별관리지역”으로 설정, 매일 2회 예찰·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 강화
    - 전국적 예찰(산란율, 폐사율)을 발생지역은 일 2회, 비발생지역은 1회로 구분, 행정기관·방역요원·농협 등이 농가를 분담 실시
  - 해외 발생상황 및 유입방지 조치
    - 대만·일본·중국 등 아시아 10개국 및 미국·캐나다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동시에 발생, 베트남·태국에서는 감염환자 발생
      - ※ 외국의 발생동향 : 대만('03.12.31), 베트남(1.9), 일본(1.12), 태국·캄보디아(1.24), 인도네시아(1.25), 파키스탄(1.26), 중국(1.27), 라오스·홍콩(1.28), 미국(2.7), 캐나다(2.20)
      - ※ 인체 감염사례 : 베트남 27명(사망 20), 태

- 국 12명(사망 8), 캐나다 2명(사망 없음)
- 발생국산 가금류 및 그 생산물 수입금지, 검역이 완료되지 않은 가금육(태국 3,189톤·중국 133·미국 4,420) 반송·폐기
- 가금류 질병문제 국제회의(1.28)와 아시아 지역회의(2.26~28)에 참석, 세계보건기구(WHO)·국제수역사무국(OIE) 등과 공동대처방안 협의
- 발생국 운항 항공기·선박 및 해외 여행객에 대한 검역·검색 강화
  - 검역탐지견 집중투입, X-ray기기 활용 등 휴대품 검색
- 발생원인·전파경로 역학조사
- 국내 발생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변이에 의한 것이 아닌 해외에서 새롭게 유입된 것으로 평가
  - 국내에서는 H9N2형의 저병원성 바이러스가 확인되고 있으나, H9형은 고병원성으로 변이된 경우가 없음.
  - 국내 분리 H5N1 바이러스는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결과 과거 중국 등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 높은 상동성, 중국 분리주 계통으로 추정
- 다양한 유입 가능요인들에 대한 분석결과 철새에 의한 유입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.
  - 불법 축산물 반입, 철새, 해외여행객에 대한 위험도 평가결과 철새 > 불법 휴대축산물 > 해외여행객의 순으로 분석되었음.
  - 발생시점이 우리나라의 철새도래시기와 일치, 주 발생지역인 음성, 천안 등이 철새도래지와 인접하는 공통점이 있음.

- 다만, 유입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된 불법 휴대축산물(가금육) 및 해외여행객에 의한 발생가능성도 완전히 배제 못함.

- 질병 전파요인을 분석한 결과, 감염된 생축의 이동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사람 및 차량(분뇨·사료)의 이동과 오염된 종란(난좌)의 이동 등 기계적인 전파방식으로 확인되었음.
- 피해농가 지원대책
- 살처분 농가 등 지원현황 : 총 소요액 1,531 억원(지급 787억원)
  - 직접피해농가(579억원) : 살처분보상 458, 생계안정자금 40, 가축입식 81
  - 간접피해농가(952억원) : 경영안정자금 666, 수매·도태 271, 소득안정 15

구 분	총액(억원)	비 고
살처분보상금	458	살처분농가
생계안정자금	40	살처분농가
가축입식자금	81	살처분농가
소득안정자금	15	입식제한농가
도축·가공장 등	166	영업중단 도축· 가공장 및 부화장
경영안정자금		
농가 등 경영안정자금	500	일반지역 닭·오리 농가
수매·도태자금	271	닭 857만수, 오리 143만수 수매
합 계	1,531	

- 향후 대책
-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설정·운영(11월~익년 2월)
- 발생국 수입금지 유지 등 국경검역 철저로 병원체 유입 차단
  - 발생국산 가금류 및 그 생산물 등 수입금지, 발생국 운항노선 특별 검역·검색 강화
  - OIE·WHO 등 국제기구와 공조 강화, 해

### 외 발생정보의 신속 수집

- 과거 발생지역 특별관리 및 전국적 농장 혈청검사·농장예찰 강화실시로 재발요인을 제거
  - 농장 등 소독강화로 사람·차량·철새 등에 의한 병원체유입 차단
  - 사료포, 배합사료 저장조, 퇴비장 등 야생조류 접근을 차단 계도
  - 오리농장·도축장 혈청검사 및 철새도래지 분변검사
- 가금 질병방역 홍보교육 강화
  - 축사내·외 주기적인 세척·소독,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통제·소독 등 차단방역 철저
  - 농가의 사육가금에 대한 산란율·폐사율 등 예찰실시 및 이상증상 발견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철저
- 사전예방 및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제도개선
  - “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” 개정(‘04.5.17)
  - “조류인플루엔자긴급행동지침(SOP)” 제정(‘04.6.30)
- 가금사육농가 당부사항
  - 축사 및 그 주변에 대해 주기적인 세척·소독, 사람 및 차량(가축·사료·동물약품·가축분뇨·달걀 등 운반차량) 출입통제·소독 등 차단방역
  - 사육가금에 대한 세심한 임상관찰 및 의심증상을 보이면 신속히 신고
  - 축사내, 사료보관시설, 분뇨처리장 등 야생조류 및 설치류 접근차단

-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준수사항 교육 등 사후관리 철저

### 나. 닭 뉴캣슬병 방역

#### 뉴캣슬병이란?

- 닭·꿩·메추리 등 조류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며 호흡곤란, 설사, 결막염, 다리와 목의 마비, 산란감소 등의 증상을 나타냄.
-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닭에서 최고 100%까지 폐사가 일어나며,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나 예방접종프로그램(육계 2회, 산란계 4회 이상)에 따라 예방접종과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할 경우 예방이 가능함.
-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전염병이며 국제수역사무국(OIE)은 List A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음.

#### 1) 방역현황

- 연도별 발생동향
  - 1927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
  - 3~5년을 주기로 전국적인 유행, 이는 예방접종률과 상관관계
  - 전형적인 겨울철 전염병이었으나 최근 봄과 초여름 집중 발생
    - 육계와 삼계의 사육수수가 4월부터 시작하여 5~6월에 급증, 7월에 정점에 이르는 현상과 관련됨
  - 발생동향: ('00)84건 → ('01)40 → ('02)85 → ('03)51 → ('04.8)25
- ※ 닭 뉴캣슬병은 전세계적인 발생을 보이고

있으며, 대부분의 나라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음.

#### □ 방역 추진사항

- 「닭 뉴캐슬병 근절대책」('96.6)을 수립하여 예방약 공급, 혈청검사 지원 등 단계적인 방역 추진
  - 예방약공급 확대 : ('97)부화장 공급 → ('01~)부화장+농장 공급
  - ※ 공급물량·예산액 : ('04)12억수분, 48억 원
- 닭 뉴캐슬병 방역관리방안 수립·추진('02.11)
  - 방역강화를 위한 법령 제도개선 방안 강구
  - 질병의 예방·차단방역 관리
  - 방역기술 개발·보급 및 교육·홍보 강화 추진
- “뉴캐슬병방역실시요령”(농림부고시 '03.7.21) 제정·시행
- 종계장·부화장·농가의 예방접종 지도(예방약 보관, 접종시기·방법 등)
- 예방접종확인서 교부·보관 및 미제출시 도축제한
- 예방접종확인을 위한 판정기준(HI, ELISA 법)
- 뉴캐슬병 발생농장에 대한 조치
  - 외부인 및 가금·생산물의 이동통제, 소독 등 긴급방역, 역학조사 등
- 예방접종 미실시농가에 대해 사육규모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#### 2) 방역대책

#### □ 국가 단위의 방역대책

- 뉴캐슬병 예방약 무상공급 규모확대를 통한 집중적인 예방접종 실시
- 부화장 및 육계농장에 대한 예방접종 점검 강화로 감수성계 존재 최소화
- 도계장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및 방역점검 과 감염계 도축단속에 의한 질병확산 차단
- 뉴캐슬병 방역실시요령 운용 철저
- 뉴캐슬병 만연에 따른 위험성에 대응한 예방접종 권장프로그램 수정 등

#### □ 농가 단위의 방역대책

- 철저한 차단방역이 중요 :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는 경우에도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(가축·사료·동물약품·가축분뇨 등 운반차량)에 대한 통제 및 소독 등 차단방역에 소홀하면 뉴캐슬병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.
- 동시 입식/동시 출하를 하여야 농장내 계군 간의 지속적인 뉴캐슬병 순환 감염과 상재화를 막을 수 있으며, 출하후에는 축사를 청결하게 청소하고 철저히 소독하여야 함.
- 축사 내·외부와 그 주변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함.
- 병아리 구입시에는 출처가 분명하고 믿을 수 있는 농가 등에서 건강한 병아리를 구입하도록 하고 부화장 등의 예방접종여부를 반드시 확인, 중병아리 구입시에도 반드시 예방접종여부를 확인한 후 구입.
- 감염계의 이동은 절대 삼가야 하며,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다른 양계농가의 방문을 자제하며, 이웃농장과는 전화로 의견교환을 함.

- 부화장에서의 분무접종 실시여부가 의심스럽거나 미덥지 못할 경우에는 농장에서 병아리 도착 즉시 분무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안전하며, 분무접종시에는 반드시 분무용으로 허가된 백신을 사용하여야 함.
- 여건상 음수접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B1 또는 라소타 백신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며, 부화장에 공급된 분무용 백신을 음수로 투여하면 효과가 약해서 뉴캐슬병 감염 시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음.
- 분무접종용 분무기는 효과가 인증된 분무접종 전용 분무기를 사용하여야 하며, 희석액 양의 계산 및 분무접종 시술은 반드시 전문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실시하고, 분무시에 계사내부를 어둡게 하여 병아리들의 움직임이 없도록 해야 면역이 고르게 형성될 수 있음.
-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백신의 선택, 접종일령, 접종방법, 농장의 바이러스 오염정도 등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전문기관 또는 수의사와 상의한 후 접종해야 함.
- 농장오염으로 인하여 예방접종을 해도 지속적 피해가 있을 경우, 1일령때 생독백신을 분무접종 또는 점안접종을 하고, 동시에(또는 1주령 이내) 오일백신 1/2~1수분을 목뒤에 피하접종하면 출하시까지 추가접종 없이도 피해를 확연하게 줄일 수 있다.

### 3) 향후 추진계획

- 닭에 대한 뉴캐슬병 예방접종 100% 실시로 발생 최소화

- 부화장 및 양계농가에 대한 예방약공급으로 100% 예방접종 실시
  - (02) 10억수, 40억원 → (03) 11억수, 45억원 → (04) 12억수, 48억원
- 종계장·부화장 및 농가의 예방접종 철저지도
  - 예방약 보관, 접종시기 및 방법, 예방접종 확인서 교부 등
  - 부화장에서 부화 1일령 병아리에 정확한 1차 예방접종 실시
  - 2차접종은 농장 입식후 10일이내, 산란계·종계는 추가접종
-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행정처분 강화
- 뉴캐슬병 혈청검사사업 지속 실시
  - 육계는 닭 도축장, 종계·산란계는 농장 중점 실시
  - 검사물량: 연간 500천건 이상
- 예방접종여부 확인검사 결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철저
  - 혈청검사결과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농가에 대하여 사육규모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

### 다. 종계장·부화장 방역대책(추백리·가금티프스)

#### 추백리·가금티프스란?

- 추백리와 가금티프스는 급성 또는 만성적으로 발병하는 닭의 소화기계 질병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2종 전염병이며, 병원체는 살모넬라의 일종인 살모넬라 풀로룸(*Salmonella pullorum*), 살모넬라 갈리나룸(*S. gallinarum*)임.

- 현재 미국, 유럽,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발생이 근절되었으나, 국내에서는 육용종계, 육용 병아리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음.
- 추백리, 가금티프스는 오염되지 않은 병아리 입식, 감염계 색출·도태 및 농장간 차단방역을 철저히 할 경우 예방할 수 있는 질병으로 농가 자율방역 대상 질병임.
- 종계장의 추백리 예방을 위하여 농림부고시로 추백리 방역실시요령을 제정하여 '78년부터 관리하고 있음.

#### 〈 추백리 · 가금티프스의 전파 및 증상 〉

- 감염종계로부터 전파되는 난계대전염 또는 오염된 분변을 통하여 수평전염으로 발생
- 발병된 농장에서는 감염후 회복된 보균닭으로부터 균이 계속적으로 전파됨으로 한번 오염된 농장은 상재화되기 쉬움.
- 추백리 감염시 어린 일령의 병아리에서 흰 설사와 함께 높은 폐사율을 나타내나 성계에서는 보균계로만 존재
- 가금티프스는 어린 일령의 병아리에서부터 성계에 이르기까지 높은 폐사율을 특징으로 함.

#### 1) 현황

- “종계장위생관리요령(농림부고시)”에 의한 방역관리
- 종계의 입식·출하, 예방접종, 질병 정기검사 등을 통한 종계장의 방역관리로 건강한 병아리 생산, 공급
- 관할 시·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주기적으

#### 로 방역규정 이행여부 확인

- 종계 소유주의 참여의식 부족, 검사물량 과다 및 일선기관의 인력난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음.
- “추백리방역실시요령(농림부고시)”에 따라 종계장에서 난계대(卵繼代)질병인 추백리 발생 최소화
- 소유주의 자가검사와 시험소의 확인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종계 검색, 도태
  - 자가검사는 계군별 전수, 확인검사는 사육마리수의 3% 표본추출
  - 검사결과 양성종계 살처분, 양성을 1%이상 종계군 전수도태
  - 확인검사실적  
('02) 147,204수(양성 752, 0.51%) → ('03) 170,577(양성 931, 0.54)
- 양성종계군 도태에 대한 정부보상이 없어 도태 부진
- 난계대질병의 하나인 가금티프스 발생이 최근 감소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방역실시요령이 미비
- 질병 발생현황 : 가금티프스 감소 추세
  - ('00) 79건 → ('01) 121 → ('02) 144 → ('03) 150 → ('04.9) 32
- 부화장에 대한 방역관련 규정이 없으며 관리가 되지 않음.
- 다만 '02. 12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서 소독시설·장비의 구비를 의무화
  - 출입차량·사람에 대한 소독, 알을 부화하기 전·후 부화장 소독실시
- 부화 1일령 병아리에 대한 뉴캣슬병 예방접종실시 의무

## 2) 질병 발생현황

구 분	'00	'01	'02	'03	'04.9	비 고
추백리	-	20천수 (4건)	2 (5)	1 (2)	-	
가금티프스	725천수 (79건)	735 (121)	1,835 (144)	1,585 (150)	247 (32)	

### □ 발생동향 분석

- 국내에서 추백리는 1940년, 가금티프스는 1992. 8월 최초 발생
- 감염종계로부터 알을 통해 병아리에 전파 되는 난계대 전염병임.
- 감염후 회복된 보균닭이 균을 계속 배출하여 질병 전파
- 추백리 발생감소는 종계장의 자가검사와 시험소의 확인검사로 감염종계의 살처분 및 도태에 의함.
- 가금티프스는 산란계에서 많은 피해를 유발하였으나 '01년 산란계에 생균백신 도입이 후 발생이 감소
- 오염종계로부터 난계대전염이 의심되는 육계의 가금티프스 발생 증가
- 종계의 예방접종 적용은 추백리 · 가금티프스 근절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감염종계 검색 · 도태정책 유지가 바람직
  - 종계 생식기 감염에 따른 난계대전염을 완전히 방어할 수 없고, 후대병아리의 면역기능을 충분히 유도하기도 어려움.
  - 예방접종에 의한 항체형성으로 혈청검사 시 자연감염계와 구분이 어려워 종계에 예방접종을 금지하고 있음.

### □ 발생증가 사유

○ 출입차량 및 사람 등 질병 전염원에 대한 차단방역 소홀

- 감염시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육용종계의 특성상 오염된 종란을 통한 병아리의 난계대전염에 의해 발생 증가
- 위생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백세미 생산용 산란계의 사육증가로 어린 일령의 백세미에서 발생
- 항생제 등 치료약제 투여시 일시적인 효과가 있으나 완치가 불가능함으로 월인균의 농장오염 및 타 농장으로 전파

### 3) 추백리 · 가금티프스 방역추진 상황

- 전세계적으로 추백리 · 가금티프스 등 살모넬라 감염종계의 경우 도태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우리나라도 도태정책 유지
- 추백리검진사업비 지원 : ('02) 16백만원 → ('03) 23 → ('04) 17
- 살모넬라균의 특성상 백신에 의한 완전한 면역형성은 현재 불가 하며 종계군의 백신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(선진국에서도 종계군의 백신사용은 추백리 및 가금티프스 근절 후에 *Salmonella enteritidis* 백신을 적용하고 있음).
- 추백리방역실시요령에 의거 종계 소유주의 자가검사와 시험소에서의 확인검사를 실시하여 추백리 양성률에 따라 살처분 등 도태
- 확인검사 결과 양성률 1% 미만일 경우 양성 종계 살처분후 보상금 지급
- 양성률 1% 이상시 종계로 사용금지 및 종계장 양성계군 전수 도태

### 〈외국의 추백리·가금티프스 방역정책〉

- 미국은 농무성 NPIP(National Poultry Improvement Plan)에 적합하도록 부화장 및 종계장에 대해 추백리 및 가금티프스 청정계군임을 증명하여야 됨.
- 청정자격이 없는 농장의 모든 생산물은 주(State) 유입이 금지
- 추백리 및 가금티프스 감염이 확인된 계군은 음성시까지 격리
- 일본, 영국 등 EU에서도 양성종계의 경우 도태
- 일본은 “가축전염병예방법”의 자주적조치 조항에 근거하여 양성종계군(종계장 전체) 도태
- 영국은 가금위생계획에 의거 추백리·가금티프스 질병검사 의무화(자가검사 실시) 양성종계장 도태
- 덴마크의 경우 살모넬라 검사후 양성계 출하 불허(위반시 벌금형)

### 4) 방역관리 강화대책

- “종계장·부화장방역관리요령”을 제정, 효과적인 방역체계 구축
- 종계장·부화장의 위생관리와 주요 닦질병(추백리·가금티프스·뉴캐슬병 등) 방역에 관한 사항을 제정, 총괄관리 운용
  - 현행 종계장 관련규정을 통폐합하고 부화장 및 가금티프스 방역사항을 추가, 종계장과 부화장 연계 질병관리
- 종계 확인검사제도 개선
- 확인검사기관 : 원종계 검역원, 종계는 시험

### 소로 역할 분담

- 검사방법 : 효소면역법(ELISA)을 적용, 정확성 향상
- 검사시료기준 : 계사당 30수이상, 양성계 출현시 300수이상
- 검사시기를 명확히 구분, 감염계 적기 색출
  - 계사별 120일령~산란개시전 확인검사, 1년이내 추가검사
- 추백리·가금티프스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철저
- 발생상황, 발생경위, 분양부화장·종계장 등을 정확히 조사
- 역학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, 발생원인에 대한 추적조사 실시
- 추적조사시 방역사항에 대한 지도·점검 및 제규정 위반시 조치
- 추백리·가금티프스 방역조치 미이행 및 우수종계장·부화장 축산전문지 공표
- 대상
  - 양성종계군의 동거종계에 대한 도태 또는 종계 사용금지 조치 미이행 종계장
  - 추백리·가금티프스 발생농장 추적조사를 통해 감염종계 유래 병아리 분양 종계장 또는 소독 등 방역관리 부실 부화장
- 공표절차 : 검사기관 양성 종계군 판정 또는 추적조사 결과 → 농림부 보고 → 확인조사 → 전문지 게재
- 종계업·부화업 등록기관에 통보, 등록취소 등 법적조치 강구
- 위생·방역관리 우수 종계장 및 부화장 전문지 공표 동시 추진 C